

대구대학교 사범대학과 영남대학교 사범대학 자매결연 협정서

대구대학교 사범대학과 영남대학교 사범대학은 다음의 사항에 합의한다.

1. 본 협정은 "대구대학교 사범대학과 영남대학교 사범대학의 자매결연 협정" 이라고 부른다.
2. 본 협정은 대구대학교 사범대학과 영남대학교 사범대학 쌍방의 상호이익과 발전에 공헌하기 위하여 서로 협력하는 데에 있다.
3. 대구대학교 사범대학과 영남대학교 사범대학은 서로의 필요에 따라 다음의 사업을 추진한다.
 - 1) 교육 및 연구의 협력
 - 2) 교육학술자료, 간행물, 기타 정보의 교환
 - 3) 지역사회 교육 및 문화발전과 사회봉사와의 협력
 - 4) 기타 두 학교 사이의 협의에 의해 결정된 사항
4. 본 협정에 근거한 여러가지 사업의 시행은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쌍방이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행한다. 사안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계획을 규정할 수 있다.
5. 본 협정을 체결하고 실행함에 있어서 쌍방은 호혜평등의 정신에 입각하여 상호 독자성을 존중한다.
6. 상호협력의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 위원은 대구대학교 사범대학장 및 학장이 추천하는 소수인과 영남대학교 사범대학장 및 학장이 추천하는 소수인으로 구성한다.
7. 본 협정은 어느 한쪽으로부터 협정 폐지를 요청하지 않는 한 계속하여 효력을 갖는다.
8. 본 협정은 양측의 동의에 의해 개정할 수 있다.
9. 본 협정은 쌍방의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.

1997. 11

대구대학교 사범대학장(인)



영남대학교 사범대학장(인)

